

“이대로면 남는 학과 아무 곳도 없을 것”

동국대 학문구조 개편안 발표 앞두고 학내 구성원 반발 거세

동국대(총장 김희옥)가 학문구조 개편안(RE_START PROJECT)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학내 구성원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로 학과가 개편되는 학과생·교수·동문들의 반대 입장이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국대는 올해 3월 'RE_START PROJECT' 비전 선포식을 열고 학문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과정에서 학과간 통합 추진 계획이 알려지자 해당학과와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학교 측은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문예창작학과, 북한학과, 윤리문화학과 등의 학과 개편안을

이들은 “학교 당국의 일방적이고 대안 없는 구조 조정의 칼날이 일어날 경우 동국대 윤리 교사 출신이라는 자부심과 역량은 타 대학으로 넘어갈 것이 분명하다. 교직에 진출하는 후배가 없는 동국대 윤리 교사들의 명맥은 끊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21일에는 윤리문화학과 총동문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학교 당국의 방침을 규탄했다.

문예창작학과도 국문과와의 통합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 아고라 청원 등을 통해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문예창작과는 2001년 국문과와 분리 후 30여 명의 작가를 배출했다. 문창과는 이를 두고 10년 전 학과를 분리하면서 강조했던 특성화·전문화 교육의 성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문예창작학과 장영우 교수는 “이제 와서 문예창작학과 국문과가 통합되면 창작 교육 약화가 우려된다. 다시 합치는 것은 국문과와 문창과 그리고 학교 전체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북한학과도 통합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북한학과는 통일부 블로그에 학교 측의 학과 통합 사실을 알리고, 류우의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북한학과 학생들과 류 장관은 15일 전후로 면담 날짜를 조율 중이다. 우리나라의 북한 학과는 1994년 동국대에 최초로 개설된 뒤 명지대 관동대 고려대 선문대 조선대 등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취업률과 사회적 관심 부재로 대부분 통폐합 되고, 현재는 동국대와 고려대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학과 학부·대학원생과 동문, 교수들은 북한학과의 제2의 도약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29일 발표했다. 북한학과는 “연계 전공 시도는 북한 전문가의 내실 있는 양성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통일 준비 전문가 육성에 차질을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북한학과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성찰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혁신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개편의 대상이 되는 해당 학과에서는 특성화 교육이 정착되는 시점에서 개편이 진행되는 점과 취업률과 재학률이 개편 기준으로 작용한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 순수 기초 학문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허남결 윤리문화학과 교수는 “사회적 수요가 없다고 개편을 추진한다면 향후 어떤 학과가 남게 될지 의문이다. 뻔선이 아닌 덧셈의 발전 방향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초안 발표 후 꾸준히 학생과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더 이상의 공청회나 토론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개편 기준으로 알려진 취업률과 재학률에 대해서도 여러 기준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동국대 교무팀 관계자는 “취업률과 재학률은 개편 기준 중 하나로 논의된 것일 뿐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도 결정했다. 12월 중 내부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다. 학과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통한 상호교류 확대와 상승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제26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성료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11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26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시상식과 개막식을 개최했다. 전시회는 불교중앙박물관에서 12월 15일까지 계속된다. 이날 시상식은 ‘신중도’의 양선희 작가가 대상, ‘몸마니반메혹소통과 천우사화 소통’의 김승열 작가, ‘마애약사삼존불’ 김영한 작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자승 스님은 “불교미술은 1700년 한국불교를 민족 예술로 승화시킨 선물”이라며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불자들의 노력을 중대에서 적극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특화 교육 정착 훼손 우려 목소리에 학교측은 “상승 효과 유도” 해명

만들었다. 이들 학과는 각각 국문과, 정치외교학과, 철학과로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 학교 측은 'RE_START PROJECT'를 '교육 상품화' '학과 구조조정'으로 규정하고 반대활동을 펼치고 있는 학생 연대기구 '우리 학문을 지키기 위한 동행'도 총회를 열고 최종 요구안을 11월 30일 발표했다. '동행'은 이번 개편안의 전면 철회와 학과 발전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윤리문화학과 출신 교사들도 25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학과 개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190여 윤리문화학과 출신 교사들이 중·고교에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있다. 30년의 짧은 역사와 교직 선택 비율이 사범대보다 낮은 인문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작지 않은 성과다. 윤리문화학과 교사 동문들은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철학과로 통폐합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유지는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 불가”

지정 기준안 관련 사찰의견 수렴

조계종이 자연공원법 내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기준(안)' 마련을 위한 사찰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조계종 사회부(부장 혜경)는 11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전통신찰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사회부는 최근 각 사찰을 방문, 현장을 확인한 뒤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을 위한 1차 시안을 도출했다.

검토결과 실학사 무량사의 경우 사찰 소유 토지가 없어 전체 지정이 곤란한 상황이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에서는 지정 대상을 사찰 소유 토지로 한정해 토지 소유가 중단 또는 사찰 명의로 공시된 경우 이외에는 지정이 어렵다. 무량사는 토지가 주지 스님 개인 소유로 돼 있다.

오대산 월정사는 적멸보궁과 사자암이 80m 가량 떨어져 있어 공원문화유산지구 집단화 지정이 불가능하다. 집단화 적용 대상은 본 사찰과 암자, 또는 본 사찰과 부속건물을 일단의 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사찰이 아닌 암자간의 집단화 적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안을 확인한 사찰들은 미흡한 점들을 지적했다. 월정사 박재현 중무실장은 “문화재보호법은 외곽 500m 기준인데, 자연공원법은 문화유산지구는 외곽 경계에서 최대 300m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또 “전통신찰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폐사지도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회부장 혜경 스님은 “자연공원법은 유일하게 보호구역내에서 행위 금지가 아닌 점을 이해해 달라. 의견을 수렴해 환경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직무연수 : 경기교육 2011-269

겨울방학 교사직무연수 모집

교실의 행복

열린마음으로 행복한 교실을 만들고자 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NAVER **교실의 행복**

모집대상 | 전국 유치초중등 교원 및 교육 전문직 종사자 전체
교육일정 | 2012년 1월 9일~1월 13일(금) 09:00~16:00, 5일간 - 총 30시간/2학점 인정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모집기한 | 2011년 12월 30일(금) 수강료 | 7만원
신청방법 | 네이버블로그 "교실의 행복" / www.hansi.org / hansi@hanmaum.org 로 신청 가능
문의 |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교육원 031-471-6926~7 * 월요일 휴무

1면 조계종 원로스님들께 드리는 공개서한 4항에 이어 →

5. 제불여래의 법통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불여래의 법통성과 관련, 첫 번째 예를 든다면, 불제자라면 누구라도 잘 알고 계신 七佛通戒의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의 가르침입니다. 문제는 칠불통계에서 실시된 선악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입니다. 예컨대 징계와 관련한 선악판단의 기준은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입니다. 첫 번째 징계 등 문제해결에 임하

는 위원이 선심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징계 등 혐의자를 참회시켜 법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선이고, 반대일 경우는 불선, 즉 악입니다. 또한 안으로 5법이 있어 징계혐의자를 거죄, 억념, 자백시키는 절차를 밟아 당사자로 하여금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선이고, 악명이 유포되게 하는 것을 악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경과 율에 보이는 출가사문과 수행자(도인)에 관한 제불의 설

시입니다. 가) “타인을 해롭게 하는 자는 출가자가 아니며, 타인을 괴롭히는 수행자(도인, 사문)가 아니다.”(법구경 184계와 사분율), 나) “비난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계율에 의해 자신을 지키는...”(법구경 제185계와 사분율). 이상 제불여래의 법통성에 비추어 중정 자격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탈 사면과 관련, 고산 대화상께 드리는 공개서한 - 제1신 -

고산대화상(이하 대화상으로 칭함)께서는 용성·동산 문도 가운데 94년 佛法沙汰와 함께 종단에 등장하시어 호계위원장과 총무원장의 직책을 수행하셨습니다. 현재는 종단의 전계대화상으로 재 추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기 중정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산문도의 한 사람이자 소위 개혁종단에서 치탈처분을 받은 자로서 치탈처분 등과 관련, 당시 호계위원장이자 총무원장으로서 한국불교역사상에 그 유래가 없는 원로 중진승려들을 희생시킨 대화상께 개혁회의 치탈(멸빈)처분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공개서한을 드리오니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대화상께서는 이와 같은 석존의 가르침에 반한 1항과 같은 소신을 버리지 않은 채 중정으로 추대될 날만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만일 대화상께서 중정이 되신다면 잘못을 떠나 중정계 용서를 구걸하는 자는 살아남지만, 율장에 명시된 비법비율(非法非律)의 갈마를 하신 고산중정을 향해 의견을 하는 승려는 다음 3항에서 보는 한 생명도 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서 94년 개혁회의와 같은 쿠데타적인 종권찬탈과 치탈처분과 같은 회복할 수 없는 극 징계를 결석심판에 의해 확정되는 고등종교단체가 지구상에 존재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1. 대화상께서는 자신의 회고록 『지리산의 무죄소』 표지에 “한번 하고자 하는 일은 그 누가 반대해도 하는 성정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현해서 못하게 한다면 그만 두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중도에 폐한 일은 없었다. 이러한 의지로 감사와 법사와 포교사와 율사와 선사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고 써어왔습니다. 그리고 동 회고록의 날개 뒷면 안쪽에 제자들에게 들려준 경책의 글로 “남에게 용서를 구걸하지 않고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3. 대화상께서 1961년 4월 본사 범어사에서 화엄경을 빌리러 갔다가 산문출송당한 사건과 관련, “부처님의 율법이나 조사의 청구나 경율론 삼장을 다 열람해도 이런 법칙은 어디에도 없다. 노소대중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백사갈마를 해서 모든 경중범죄를 처벌했지, 젊은 사람 범죄했다고 젊은 사람들에게 맡겨서 처리하고, ... 하는 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회고록 p. 239)고 서술하시고, ‘교무 진상스님 방으로 뛰어가 손에 쥐었던 ‘칼을 진상스님 목’에 대고, 바르대로 말라.

5. 94년 불법사태와 함께 고산대화상 등으로 구성된 개혁회의는 종전 승니법을 ‘불계중 4바라이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은 자’ (현행 승려법 제46조 3항 멸빈사유)에 한해 멸빈(치탈)처분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또한 승려의 유흥장 출입, 음주난동, 이성관계 및 문예활동으로 인한 종단과 승려의 위신 손상과 품위 실추 등에 대한 제재규정도 삭제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중벌개정과 삭제는 출가승단인 조계종을 재가승단으로 변질시킨 요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 절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세간의 법정에서 실형만 받지 않으면 묵인되는 종단으로 전락해 했습니다. 나아가 ‘정치운동 참여 금지 삭제’와 민주화, 환경보호, 통일 등을 위한 행위가 원인이 되었던 경우를 중무원의 결격사유(중무원법 제6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소남은 위 구절을 읽는 순간 대화상께서 석존의 법·율과 종헌·종법에 반하여 종단을 장악한 소위 개혁종단의 호계위원장과 총무원장으로서 종헌과 율에 반하는 결석심판으로 20여명의 원로 중진 승려들을 치탈하여 종단에서 추방하고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제거할 생각으로 이 각본을 써서 지시한 게지...네가 율장을 뒤져서 엉터리 징계서류를 만들었지! 율장 어느 구절에 살인(미수)죄 등에 속한다는 말이 있는나고 따지자 사죄하며 그것은 모스님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해서 칼을 거두고, ‘율바른 승려가 되려면 없는 죄로 사람을 매장시키는데 앞장서지 말라’ (이상 취의)고 쓰셨습니다.

한마디로 조계종을 사실상 재가승단이자 살인, 절도 등 중죄를 범해도 세간법의 실형만 받지 않으면 제재를 받지 않는 종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정지정단이자 반국가단체로 참여와 투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2. 석존께서는 출가비구는 “서로 서로 가르치고 서로 서로 말을 들어주어서 점차 깨우쳐줌(彼此相敎 共相受語 展轉開悟)”이 없는 삶은 실사 규정을 정하여 이를 지키므로써 안락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리석음을 자들이 같이 산 것이다. 그것은 마치 흰 염소(白羊)와 畜獸(혹은 怨家)와 같이 산 것과 다르지 않다. 외도의 병어리 법(佛法)의 수용이라고 하셨습니다.

4. 그렇다면 대화상께 묻습니다. 첫 번째 석존의 법·율과 종헌·종법에 반한 승려대회와 같은 불법집회를 통해 여법한 교시를 내린 중정을 비법으로 불신임하고, 불법집회에 참석한 출가와 재가중이 폭력행사를 통해 종헌기관인 총무원 청사를 점령한 것과 두 번째 동 불법집회의 결의에 의해 출범한 개혁회의 호계위원장과 소위 개혁종단의 제2대 총무원장으로서 결석심판으로 종단에서 총 20여명의 원로 중진을 치탈(멸빈)하여 종단에서 영구히 추방하는 징계결의를 하신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존의 법·율의 어디에 근거하여 그와 같은 징계를 하겠습니까. 더욱이 종헌상의 칠불쟁쟁과 같은 중진 분쟁 해결과 관련한 규정에 반한 결석심판이라는 데서 결석심판에 의한 징계는 중헌위반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성공한 쿠데타도 단죄하는 오늘날과 같은 민주

6. 그렇다면 제1신의 마지막으로 물겠습니다. 대화상께서는 94년 종단 제도 개혁 당시 종헌·종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승인하는 개혁회의 의원이자 출가승단인 조계종의 율사이셨습니다. 특히 동산 대종사와 석암 대종사로 계승되어 오는 계단을 전수받은 율사로서 석존의 법과 율의 어디에 근거해서 앞서서 지적한 바와 같은 종헌상의 구축계와 광율(廣律)의 제반규정에 반한 중벌개정을 단행하는데 동의하셨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현하시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용인했습니까. 아니면 서상계를 받기 위해 기도하실 때 나타난 석가모니불 문수보살 미륵보살께서 나투시어 心直名持戒요 心曲名毀犯(마음만 곧으면 지계요 마음이 굽으면 계를 범이라고) 재차 일러주셔서 계는 마음의 직曲의 문제라고 판단하시고 종헌과 율의 규정에 반한 중벌개정에 동의하고, 종헌과 율의 규정에 반한 치탈 등 징계를 단행하셨습니까?